

Jisung Horizon Newsletter

December 2008 Vol.1. No.3

01 커버스토리

- 법무법인 지평지성 도산팀 소개
- [인터뷰] 지평지성 도산팀 팀장 - 홍성준 변호사
- [도산 칼럼] 파산관재인이 바라본 파산실무 (최찬욱 변호사)

11 법률칼럼

- 중재조항 작성시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의 정확한 인용 필요성(김지홍 변호사)

14 열려라 중국

- 외환관리국 142호문 시행 후 외상투자기업 경내 투자에 대한 제한 (임청 중국변호사)

16 생생 러시아

- 러시아 회사의 임의청산 절차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19 Vietnam LIVE!

- 베트남 투자 관련 소고 (김도요 변호사 • JS HORIZON Vietnam 법인장)

21 주목! 이 판례

-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죄 (대법원 2008년 11월 13일 선고 2008도7143 판결)

24 최신법령

- 1주택자, 2년내 집 사고 종전주택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출산 전 진료비 부가급여(고운맘 카드 지원) 제도 시행
- 은행의 외화예금도 5천만원까지 보호

25 지평지성 소식

- 'PF 건설사업의 위기에 따른 법적 문제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 '러시아연방의 에너지 개발 관련 법제 세미나' 개최
- 지평지성, LS니꼬동제련의 휘닉스엠엔엠 인수 법률자문
- [공익강좌]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 사랑의 김장 나눔 & 사랑의 연탄 나눔

35 영입인사

- 금태섭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지평지성
JISUNG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02-6050-1600 FAX: 02-6050-1700 <http://www.js-horizon.com> E-mail : master@js-horizon.com
Copyright © JISUNG HORIZ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커버스토리 - 지평지성 도산팀 소개)

법무법인 지평지성 도산팀 소개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도산전문가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관재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등으로 구성된 명실공히 도산분야의 전문가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동안 도산전문가팀은 정리채권확정, 회생절차에 있는 회사의 M&A, 회생 및 파산 신청, 기업구조조정절차진행, 사고신고담보금반환청구권과 관련된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정리회사 인수절차 및 부실기업에 대한 인수합병관련 자문, 해외 도산 사건 및 국제도산 관련 법률자문 등을 통해 도산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산 관련 법률자문업무의 질은 도산법에 대한 전문성만으로는 담보되지 않으며, 대상 기업의 영업 특성과 시장 상황에 밝은 전문 변호사들의 관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소송들이 생기게 마련이므로 도산법 쟁점에 정통한 송무변호사의 참여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회생 수단으로 이용되는 M&A 전문 변호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도산팀에는 국내외 수많은 M&A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 법인은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유러머니에서 발간하는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로 리뷰(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지(誌) 2009년도 판에서는 국내 로펌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구조조정 및 도산분야에서 3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회생절차나 부실기업의 인수, 매각 및 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은 법원과 채권금융기관의 관여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건과는 달리 법원 실무 및 법원과 채권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와 경험 없이는 실제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힘듭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도산전문가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약하면서 법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원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법원의 회생실무서, 법인파산실무서를 편찬하는데도 주요 역할을 담당하여 수준높고 정확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 도산전문가팀은 해당 산업의 전문변호사들(건설, 금융, 해운 등)과 정리회사 M&A 관련 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회생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계획 수립 등 초기단계부터 회생절차 및 구조조정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2. 주요업무사례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 도산전문가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실적이 있습니다.

-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의 정리회사 진로 인수(매수자측 대리)
- 대우 조선해양의 정리회사 제이알종합건설 인수(매수자측 대리)
- 한국철강의 정리회사 영흥철강, 대흥철강 인수(매수자측 대리)
- 한국철강의 정리회사 환영철강 인수(매도자측 대리)
- 우리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의 새한마텍 매각(매도자측 대리)
- 건영, 코닉스, 서울전자통신, 오리온전기, 현대아이티 등 회생회사에 대한 법률자문
- 파산자 한양을 대리하여 국내 최초의 동의폐지
- 한양, 한길종합금융, 한국산업증권, 파산 상호신용금고, 파산신용협동조합 등 대규모 파산회사에 대한 법률자문
- 진로, 영풍산업, 서울전자통신 등 정리회사에 대한 법률고문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벨웨이브, 현대아이티 등 회생기업 법률고문
- 한양을 대리한 국내 최초의 동의폐지 신청사건 처리, 무림페이퍼의 정리회사 동해 펄프 인수 자문
- 부인권, 상계권, 공익채권 등 도산법 주요 쟁점에 관한 대규모 소송 사건 다수 수행
- UPD 청산 및 파산신청 자문, 유일정공 화의신청 자문
- 정리회사 통일중공업, KDS, 서한 매수자문, 정리회사 일신석재 매각자문
- 진로, 동아건설산업, 해태유통, 아남건설, 일화 등 법정관리

3. 주요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홍성준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박선희 변호사



황승화 변호사



배성진 변호사



강경국 변호사



조병규 변호사



신민 변호사



최찬욱 변호사

(커버스토리 - 지평지성 도산팀 소개 > [인터뷰] 지평지성 도산팀 팀장 - 홍성준 변호사)

[인터뷰] 지평지성 도산팀 팀장 - 홍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도산팀은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유러머니에서 발간하는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로 리뷰(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지 2009년도판에서 국내로 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구조조정 및 도산분야에 3위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 도산특집에서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를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지평지성 도산팀을 이끌고 있는 홍성준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도산팀 팀장 홍성준 변호사)

[질문. 1] 도산분야는 일반 민사분야와 다른 점이 있어서 법원이나 실무 변호사의 경우에도 경험이 없으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민사분야와 다른 도산분야의 특이한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님의 경우 도산분야 사건처리를 하면서 어떤 점에서 재미나 흥미를 느끼셨는지요?

[홍성준 변호사] 도산법은 회생절차에 관한 것이든, 파산절차에 관한 것이든 채권의 집단적 집행 절차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도산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산제도의 기술적인 복잡성 때문에 법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도산법은 이처럼 채권의 집단적 집행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도산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채권자에 대한 공평 처우라는 이념과 채무의 압박으로 억압된 채무자 회사의 재건이라는 점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조문을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분야 중의 하나라는 점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건이라는 것이 도산법의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도산법 실무가는 채무자 회사를 둘러싸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 회사의 당면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는 경제 현상에 항상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는 도산법이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로 치부되어 도산법을 연구하는 학자는 물론 실무가들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도산사건을 접하면서 일반 법률가로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실물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 중의 하나이고, 제가 담당하였던 회사가 도산제도를 통하여 채무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조정을 완료한 후 정상 회사로 재건되는 과정을 보면서 도산법 실무가로서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질문. 2] 최근 금융권의 유동성 악화로 많은 기업들이 부도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 어떤 조언을 해주실 생각이십니까?



[홍성준 변호사] 기업에 대한 회생신청 등을 상담해보면 지난 몇 년간의 손익실적이나 사업구조로 보아 약간의 대출만 있으면 지금 당장 처하고 있는 부도의 위기를 벗어나 정상기업으로 얼마든지 존속할 수 있는데도 자금조달이 팍막혀 있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루가 천금과 같으며 자금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은 하루가 다르게 수익성이 악화되며, 자금이 어려워지면 주요 거래처가 이탈하고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장이 폐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회사자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의 손실도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워크아웃·대주단 협약 등 다양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채권금융기관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또한 정부와 금융기관이 서로 정책적인 혼선으로 부실기업에게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여 구조조정에 전략해야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회생절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법원의 회생실무를 보면 과거의 회사정리실무에 비해 현격하게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경영진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과거 회사정리신청을 하면 곧바로 상장폐지를 당하던 사태도 대법원판결과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회생절차의 기각, 취소, 불인가,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상장폐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선택으로 인한 경영책임문제나 회사가치하락에 대한 위험부담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기존 경영진의 경우 회사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으며, 부실채무를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부실기업으로서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질문. 3]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간의 M&A가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 M&A의 경우 건설사 상호간의 이행보증으로 인한 우발채무의 불확실성 존재, 시행사·시공사·하도급업체간의 법정분쟁, 부외 부채의 가능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

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M&A에 비해 법원의 회생절차를 활용한 M&A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홍성준 변호사] 최근 건설부동산시장의 경우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유동성 악화와 부동산 가격하락, 소비침체 등으로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넘어서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건설사M&A는 건설사 내외부적 요인으로 그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도산법하의 회생절차를 활용한 M&A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통한 M&A의 장점으로 크게 세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M&A의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채권으로 인해 힘들여 조정해놓은 상황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 회생절차에서 고려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M&A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만약 기업 인수합병에서 생각지도 못한 과거 채무가 나타난다면 M&A로 인해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 인가시 미신고 채권은 실권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발채무, 부외채무를 확실하게 확정, 정리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M&A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회생절차를 활용한 M&A의 두번째 장점으로 사업구조조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관리인이 해제 또는 해지권을 행사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데, 관리인이 해제 또는 해지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서 변제를 받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게 되면 상대방이 갖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절차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손실사업장을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절차를 활용한 M&A의 세번째 장점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반대 주주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주주는 회사가 자산초과상태일 경우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실기업의 경우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므로 주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따라서 반대 주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좀더 수월하게 M&A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면책의 경우 불운한 채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도덕적 불감증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성준 변호사] 질문과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주장과 같은 논리는 극히 일부의 불성실한 신청에서 발견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런 이유로 면책제도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한마디로 년센스입니다. 우선 법원이 운용하는 면책 제도가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파산 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건이 꾸준히 증가하여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우리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금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사상 최고의 이익을 올려 왔습니다. 면책 사건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유발한다면 이로 인하여 금융권에 어떤 영향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면책제도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과중한 채무로 시달리는 채무자들로서는 탈출구가 없는 상태이어서 죽음을 생각하거나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릴 때까지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터인데, 면책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그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채무의 변제를 중단하게 되는 정도의 도덕적 위험은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채무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면책제도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의견들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JS Horizon

[신문기사]

- [법률신문 - \[인터뷰\] 지평지성 도산팀 이끄는 홍성준 변호사 \(2008.12.04.\)](#)



(지난 12월 5일 "PF 건설사업의 위기에 따른 법적 문제 세미나"에서 발제 중인 홍성준 변호사)

(커버스토리 - 지평지성 도산팀 소개 > 도산 칼럼)

파산관재인이 바라본 파산실무

최찬욱 변호사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진술과 제출서류를 검토해보고 채무자의 진술과 제출서류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혹은 처분할 재산이 있을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통해서 파산절차의 전체적인 개요와 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임무

(1)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일까지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은 관재인이 관리, 처분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채무자는 자신 소유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한을 잃게 되며, 다만 면제재산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된 재산, 그리고 파산선고일 이후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관리 및 처분권을 인정받습니다. 보통 채무자의 재산중 부동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파산관재인이 시세에 맞게끔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파산선고 당시에 경매가 진행 중이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혹은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임의매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에 배당종결된 사건도 파산선고 당일까지 배당금이 공탁되어 채권자가 회수하지 않은 배당금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됩니다.

(2) 소송수계 및 부인권행사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은 중단되거나 혹은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이 계속되게 됩니다. 파산절차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부인권 행사입니다.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해행위나 편파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파산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채무자가 자신소유의 재산을 친족에게 매각하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 보험해약금을 채권자 1인에게 빚변제 명목으로 모두 지급했을 경우,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나 편파행위가 있을 경우 파산관재인은 수익자에게 일단 서면으로 해당 행위가 통합도산법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회복되어야함을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채권자가 불응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인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통합도산법이 모든 채권자를 공정하게 다뤄야한다는 채권자평등주의의 이념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3) 채권조사 및 배당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의 경우는 배당할 재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모든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파산법원에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만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채권은 근거자료가 명백하여 파산관재인의 시인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나 신고한 채권이 부인된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파산관재인이 한 시부인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4) 임무보고 및 면책의견 진술

파산관재인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인파산의 경우 매 분기마다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현황, 채권조사현황, 재산의 처분 및 환가전망, 배당전망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하며, 절차종료시점에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는 채무자의 면책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 선택 시 주의할 점

파산절차를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1) 재산의 처분, 현황에 대한 사실적 기술

법원에서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은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기술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최근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데도 이에 대해 기술하지 않거나, 현재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파산신청 직전에 재산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였는데도 이를 사실적으로 기술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지로 면책을 앞두고 있는데 타인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이 사실이 채권자에게 발각되어 채권자가 법원에 이 사실을 고지한 후 면책불허가 결정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재산에 대해서는 숨기는 사실 없이 되도록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하는 게 좋으며, 혹 사해행위로 문제의 소지가 될 사안이 있는 경우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여부 검토

채무가 많고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파산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통합도산법에 명시된 면책불허가사유로는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매각할 경우, 허위로 채무를 증대시킬 경우,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킬 경우,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부담을 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가 있을 경우, 허위의 진술이나 문서제출이 있을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1년 내에 지급불능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이 채무를 부담할 경우, 과거 7년 내 면책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이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에도 법원 재량으로 면책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사해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상당한 채무가 있는데 고령에 앞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파산신청시 반드시 고려해야하므로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강제집행에 대한 대책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대개 빚을 변제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들어오거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이 있을 경우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채무자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실제 재산가치보다 빚이 많고 앞으로 빚을 변제할 가능성이 낮을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파산신청후 파산선고결정을 받게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고 또한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보면 파산신청으로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심한 독촉을 받거나 강제집행으로 고민이 될 경우 파산신청을 신중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안으로서의 회생절차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무분별한 파산신청을 재고하고 지나친 채권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중 어느 정도 일정부분 채무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채무자에게는 파산신청취하를 권유한 뒤 회생절차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부양가족을 고려하여 법정최저생계비의 150%를 넘는 소득이 있다거나, 채무액수가 적고 나이를 고려하면 노동능력은 충분하여 앞으로 어느 정도 빚을 갚을 여력이 있다거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빚을 어느 정도 변제하고 면책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청산가치(현재 파산을 하여 자신 소유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가치) 이상 변제가 가능하며,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어서 개인파산의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빚을 변제하고 싶은 경우에 개인파산 대신 선택하기도 합니다. 실지로 부동산이 있더라도 현재 소득으로 부동산의 실제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다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같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직업을 가진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변제하면 그러한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선택을 한다면 어느 제도가 자신에게 더 맞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JS Horizon

(법률칼럼)

중재조항 작성시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의 정확한 인용 필요성



김지홍 변호사

‘중재합의’란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재판에 의하는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당사자들 간에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¹⁾. 중재합의는 계약서 말미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재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분쟁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중재합의의 대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각하합니다²⁾. 약속대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중재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중재인 선정절차 등에 후견적으로 관여하거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중재합의의 증가 추세

언제부터인가 중재조항을 포함한 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이제 관행으로 정착되었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표준약관에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국내계약에서도 중재합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력에 의문이 있는 부정확한 중재조항을 두는 바람에 본래의 분쟁이 아니라 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분쟁에 휩쓸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재절차에 관한 합의의 필요성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2) 중재법 제9조 제1항. 단 상대방이 이의없이 소송에 응하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란 일종의 '사적 재판'입니다. 법원의 재판이라면,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소제기부터 사건의 배당, 심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재판의 모든 절차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적 재판인 중재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것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에게 융통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방해합니다. 그렇다고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매년 민사소송법에 상응하는 중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위 있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르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는 식으로 약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의 선정에서부터 중재판정문의 송달까지 모든 업무를 알아서 처리해 주며, 구체적 중재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미리 마련해 둔 중재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외에도 중재규칙을 제공하는 중재기관들은 아주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LCIA(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HKIAC(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Singapore Arbitration Centre),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이 있습니다. 중재기관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당사자들끼리 중재하는 것도 가능한데(이른바 'ad hoc arbitration'), 그 경우 채택할 수 있는 중재규칙으로는 UN국제통상법위원회가 제정한 UNCITRAL 중재규칙이 있습니다.

부정확한 중재합의의 효력

문제는 중재인 선정과 중재 절차에 관하여 잘못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다고 하는 대신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재에 의한다고 약정한 사례가 있습니다³⁾. 외국의 중재기관이나 중재규칙을 원용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국내 한 기업은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Trade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tate of California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기관이나 중재규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연 중재합의가 무효라고 보아 법원에 의한 재판을 못하게 해야 할 지 아니면 여전히 중재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라고 하여야 할 지 다툼의 소지가 큼니다. 중재를 해야 한다면 어

3) 서울고등법원 1980. 6. 26. 선고 80나535 판결 참조.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땡게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도 문제입니다.

일부 판결 중에는 당사자들이 의도한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가 불가능한 이상 중재합의 자체가 무효이고, 원칙으로 돌아와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⁴⁾.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법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도 중재합의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한 유효한 중재합의로서의 요건은 충족한다는 것입니다⁵⁾.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중재인 선정과 중재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판결 중에는 아예 특정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할 것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⁶⁾. 그러나 우리나라 중재법상으로는 이렇게 특정 중재기관을 이용하거나 특정 중재규칙에 따르라고 명령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상 법원은 중재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데, 우리 중재법에는 중재절차의 지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재법은 대신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대신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2호).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정확한 중재조항의 당사자가 중재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동의를 구해야 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법원에 중재인 선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중재절차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선정된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절차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중재법 제20조 제2항). JS Horizon

4) 국내 판결로는 서울고등법원 1980. 6. 25. 선고 80나535 판결 참조. 외국 사례로는 Nat'l Material Trading v. M/V Kaptan Cebi, No. 2:95-3673-23, 2:96-0095-23, 2:96-3288-23 (D.S.C. Mar. 13, 1997) 참조.

5)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참조. 다만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중재기관의 명칭을 잘못 기재하는 대신 처음부터 “제3기관의 중재를 받는다”고 하여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6) Warnes, S.A. v. Harvic Intern. Ltd., No. 92 Civ. 5515 RWS, slip op. at 2 (S.D.N.Y. Jun. 22, 1993). 이 판결의 법원은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는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중재규칙에 따르라고 명하였습니다. 혼란스러워 하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열려라 중국)

외환관리국 142호문 시행 후 외상투자기업 경내 투자에 대한 제한



임 청 변호사

중국국가외환관리국은 2008년8월29일에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지불결제관리 관련업무 조작문제에 관한 통지>(회종발[2008]142호,이하 "142호문"라고함)를 발표하였고 발표된 날로부터 정식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의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결제소득의 사용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은 이미 외상투자기업의 경내재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2000년에 연합하여 반포한 <외상투자기업경내투자잠행규정>(이하 <잠행규정>)중의 정의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경내투자는 중국 경내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적법하게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과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중국경내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거나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가. <잠행규정>이 외상투자기업 경내투자에 대한 제한

<잠행규정>에 따라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이 대외투자를 하려면 동시에 이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등록 자본금을 완전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2. 적법하게 경영하여 위법기록이 없어야 한다.

동시 누계투자액은 당사 순자산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 후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윤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06년에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이미“<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등기 관리 법률적용약간문제에 관한 집행의견> 시행에 관한 통지”에서 공상부문은 상술한 조건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잠행규정>은 외상투자기업 대외투자의 영역에 대한 정책이 틀리므로 심사 요구도 다릅니다.

외상투자기업은 격려류 혹은 허가류 영역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피투자회사 소재지의 공상국에 등기하면 되지만, 제한류 영역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피투자회사 소재지의 성급 상무부문의 비준을 받은 후 공상국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이 투자할 영역이 제한류에 속하는 경우 상무부문의 심사를 받을 시 여전히 상술한 조건을 부합하여야 합니다.

나. 외환관리국 142호문이 외상투자기업 경내 투자에 주는 새로운 제한

외환관리국 142호문의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결제로 소득한 인민폐 자금은 정부심사비준부문이 비준한 범위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결제소득 인민폐 자금으로 경내 지분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상무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투자성외상투자기업이더라도 경내 지분에 투자할 시 자본금의 경내 이전에 대하여 외환관리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상해 외자심사비준부문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내 지분 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외상투자기업이 자본금 결제소득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지분도 매수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142호문은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사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 입법 목적과 정책 의미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비록 현재 중국외화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외 “투기자본”이므로 “투기자본”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중국 경내에 유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입법목적을 바탕으로 발포한 구체적인 조작 정책은 이미 외상투자기업의 경내 투자에 대하여 현실적인 제한을 주었고 외국투자자들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그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으로 중국에서 신속하게 확장하거나 다원적 투자 전략을 실시하는 것을 저지하였습니다.

상기 서술로부터 알 수 있는 바 2008년8월29일부터 시행된 중국외환관리국 142호문은 외상투자기업이 자본금으로 대외투자 할 수 없으므로 재투자할 경우 예전보다 더 심각한 자금적인 도전을 직면하여야 합니다. JS Horizon

(생생 러시아)

러시아 회사의 임의청산 절차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따라 러시아 역시 주가가 50% 이상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 철수가 이어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금대여 방식으로 투자를 한 경우 조기상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의적인 투자회수가 어렵습니다. 반면 지분출자 방식으로 투자를 한 경우 대상회사의 청산을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러시아 회사의 임의청산 절차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방식에는 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른 청산절차와 채무초과상태의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도산절차가 있으나, 아래에서는 일단 청산절차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도산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 청산절차

1. 관련규정

러시아 민법은 제61조 이하에 법인의 청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법인의 형태에 따라 유한회사법과 주식회사법을 두고 있는 바, 유한회사법 제 57조 이하와 주식회사법 제21조 이하에서도 각 형태의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청산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과 러시아의 일반적인 회사형태인 유한회사의 청산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법인의 개시

법인의 청산이라 함은 법인의 권리·의무가 승계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으로 이전되지 아니하고 법인존속이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특히 유한회사는 (i) 이사회(감독위원

회), 업무집행기관 또는 사원의 발의에 따라 사원총회가 청산을 결의한 경우, (ii) 설립문서(정관 및 설립계약서)에서 정한 법인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iii) 설립목적을 달성한 경우, (iv) 법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법인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경우, (v)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산될 수 있습니다.

청산을 결의할 경우 당해 법인은 법인등기소에 청산을 결의한 사실과 그 절차에 관한 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산을 결의한 법인은 법인등기소와 협의하여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산절차 및 청사의 기한을 정하여야 합니다. 청산위원회는 선임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모든 업무집행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청산절차

청산위원회는 공보를 통하여 법인의 청산, 채권신고절차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신고기간은 공고 후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면 청산위원회는 청산 중인 법인의 재산과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내역에 대한 조사결과가 포함된 중간 청산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중간 청산대차대조표는 법인등기소와의 협의를 거쳐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산위원회는 중간 청산대차대조표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일정한 순위에 따라 청산중인 법인의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후순위 채권자에 대해서는 중간 청산대차대조표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변제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변제가 완료되면 청산위원회는 법인등기소와의 협의를 거쳐 청산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사원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 후 법인등기부에 청산의 사실을 등재하면 법인 청산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써 법인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청산에 따른 채권의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순위

가. 채권의 변제 순위

법인의 청산시 채권의 변제는 다음 순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순위 내에서는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여야 합니다.

- (i) 1순위 : 청산 중인 법인이 부담하는 생명·신체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적립
- (ii) 2순위 : 임금 및 지적재산권 이용료의 지급
- (iii) 3순위 : 담보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 지급
- (iv) 4순위 : 세금 및 부담금 등 국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지급
- (v) 5순위 : 기타 일반채무의 지급

청산위원회가 채권의 변제를 거부하거나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이 청산대차대조표를 승인하기 이전에 청산위원회를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산위원회가 정한 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접수된 채권은 신고

된 채권을 모두 변제한 후 남은 잔여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의 분배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우선 배당결의는 있었으나 배당되지 않은 이익이 있는 경우 당해 사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그 후 남은 재산은 사원의 출자좌수의 비율로 사원들에게 분배됩니다. JS Horizon

(Vietnam LIVE!)

베트남 투자 관련 소고

김도요 변호사 • JS HORIZON Vietnam 법인장



현재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이 예견되는 가운데,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진행하던 프로젝트 조차 중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환율안정을 기다리며, 베트남 파트너를 접촉하고 점진적으로 해외 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습니다. 해외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적의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면,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시장참여자들의 역동성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 투자는 장기간의 계획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시간, 인력, 투입가능 자본 등의 제한으로 완벽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많은 해외투자자들이, 그러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투자형태 및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베트남에 기 설립된 법인과 계약만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계약이나 수출입을 통한 용역, 서비스 공급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기술 이전 계약 등은 흔히 보게 되는 계약 유형입니다. 이러한 계약 이행에 수출입이 관련된 경우에는 통관 절차 및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베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베트남 세무관청의 획일적인 규제에 따라,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한국투자자와 관련해서도, 베트남 계약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특정한 계약의 경우에는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에 이러한 요소들을 계약조건에 어떻게 반영할지 미리 고려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지속적인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지점이나 법인을 세우는 것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법인 설립에 있어서 원칙적 “등록제”를 취하여 그 설립요건을 간소화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법인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법인 설립 절차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영위할 업종을 정하고, 그러한 업종이 조건부 허가 영역에 속하는지, 외국인투자촉진업종에 속하는지, 일반영역에 속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비율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종을 구체화 하여 미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면, 자본금을 정할 때 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맞는 자본금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상법 자체에 우리나라와 같은 최저 자본금제도는 없지만(신투자법의 개정으로 총 투자금의 일정부분 이상을 자본금으로 요구하던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금융업 등 일부 업종에는 최저 자본금 요건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관할관청에서는 지나치게 자기자본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베트남 법인을 외국인 투자자가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 비율에 대하여 관할관청마다 입장이 다르고, 실무에서도 아직 그 비율에 대하여 논쟁중입니다. 베트남인이 소유하던 베트남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관청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사채(bond)인수나 대출(loan)을 공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신용공여는 베트남 법상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의 허가를 받아야 인출(drawdown)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은 베트남 내 금융기관 외에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담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담보와 관련하여서는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에 대한 등록증(red book)이 발급되고, 토지사용료가 일괄 지급 방식으로 납부되지 않으면, 담보설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베트남의 담보실행제도는 한국과는 달리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고, 그 소요기간 및 절차진행 자체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용공여 시 하나의 위험요소로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JS Horizon

(주목! 이 판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죄

- 대상판결: 대법원 2008년 11월 13일 선고 2008도7143 판결
-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였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관련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1일 처음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과 검사의 항소요지

1심 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 11(이하 '이 사건 규정')은 조문구조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죄가 성립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 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8고단488 판결).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는데, 항소의 요지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합범으로 보고 있고,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가중처벌규정이므로, 이 경우에도 두 죄는 경합범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577 판결).

-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벌하는 기본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0조 제3호는 이에 위반한 자를 벌하도록 함으로써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보다 더 가벼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이미 벌하고 있다.
- ②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는 조문 체계상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보다는 가벼운 상태이다.
- ③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0조 제3호, 제45조 위반 중에서 특히 중한 형태(운전이 곤란한 상태 >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기본범죄로 상정한 특수한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또한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이 사건 규정은 ‘개인의 생명, 신체’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일반의 안전’이라는 법익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④ 요컨대 이 사건 규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중한 형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며, 그러므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그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의 상고를 인용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 ① 도로교통법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 등의 통행행위만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통행행위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이 사건 규정은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보호법익과 적용범위의 측면).
- ②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콜농도의 최저기준치를 초과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이와 달리 이 사건 규정의 경우 '형식적으로 혈중알콜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 ③ 따라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취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 원심은 전자가 후자의 결과적가중범이라는 전제 하에 후자가 전자에 흡수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죄수관계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두 개의 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죄가 나머지에 흡수되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과, '두 개의 죄가 모두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보는 것은 처벌의 범위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중한 죄에 정한 장기"에 1/2까지 가중하는 것으로부터 처단형의 범위에 대한 계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규정이 2007년 12월 21일에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이 위 규정에 대한 견해를 밝힌 판결인데, 향후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위험한 운전 행위'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향후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08년 11월 13일 선고 2008도7143 판결

JS Horizon

(최신 법령)

1. 주택자, '2년 내' 집사서 종전주택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138호)

종전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운로드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138호\)](#)

2. 출산 전 진료비 부가급여(고운맘 카드 지원) 제도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131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기간 중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20만원의 범위(1일 4만원 사용액 제한)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로 지급합니다.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KB국민은행에서 발급하는 '고운맘카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위 제도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신이 확진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이 장려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운로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131호\)](#)

3. 은행의 외화예금도 5천만원까지 보호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136호)

이제까지 은행의 외화예금은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의 외화 예금도 보험사고 발생시 1명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136호\)](#)

JS Horizon

(지평지성 소식)

'PF 건설사업의 위기에 따른 법적 문제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대한상공회의소 및 대한건설협회가 12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PF 건설사업의 위기에 따른 법적 문제' 세미나가 건설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가신청 접수 1일만에 참가신청이 회의실 정원인 300명을 훌쩍 넘었으며, 대기자 신청으로 전환한 후에도 대기 신청만 400명 넘게 접수되어 급하게 회의실을 1개 더 마련할 정도로 PF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세미나 현장에서도 발제자 및 토론자의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발표에 이어 심도있고 날카로운 질의응답이 오갔으며, 세미나

참관하셨던 관객분께서는 행사담당자에게 '이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세미나를 기대하겠다'고 격려와 당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금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시장의 중요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세미나 자료 등의 문의는 master@js-horizon.com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 세미나 요약

제1세션 : '부동산 PF의 위기와 법적 쟁점' (법무법인 지평지성 황승화 변호사)

PF자금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가 부도나면 대주단, 시공사, 수분양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데 책임준공의무의 등 관련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가 아직까지 판례나 학설에 의해 확립되어 있지 못해 사회적인 혼선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사업 관련 당사자의 개별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PF 관련 분쟁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정 당사자를 위한 일방적인 해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법적 해결 보다는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PF사업을 추진 시 사업약정서, 대출약정서 기타 PF대출 관련 약정을 체결할 때 관련 당사자의 합의내용 및 합의 동기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분쟁발생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세션 : '건설회사 회생과 M&A' (법무법인 지평지성 홍성준 변호사)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경색의 지속으로 PF 건설사업을 둘러싼 도산의 리스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이같은 건설사업의 위기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법적 절차를 통한 채무 및 사업 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회사의 수익력을 보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건설회사와 채권자측이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회생 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을 통해서도 회생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회생절차를 조기 신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조정이 수반되는 회생절차를 통해 우발채무가 제거된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M&A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토론 요약]

◇정수근 GS건설 변호사 : "국내 PF 건설사업에 있어 금융기관 우위의 사업구조와 불공정한 사업약정이 개선되어야 하고 상가나 복합물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부도난 사업장의 조속한 회생을 위해 사업약정에 따른 시행권 인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신명재 KB국민은행 금융개발 관리팀장 : "현재와 같은 주택산업의 위기 상황은 우리나라가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선택한 선 분양제도가 가져온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며 이제는 이러한 선 분양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희 원광대 법학과 교수 : "PF 사업약정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 진행시 시행권 인수 과정에서 준공된 미등기 건물을 시공사나 대주단의 의사에 따라 처분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소전 화해의 집행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병국 (주)소시어스 대표이사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건설경기 실사지수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건설경기가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를 통해 잠재부실이 해소된 중견 건설사가 M&A 대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내외 자금시장 경색은 M&A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 "현재의 미분양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건설회사 상호간의 이행보증으로 인한 우발채무의 불확실성 증가로 건설시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현재의 구조조정은 금융권 주도로 대주단협약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건설업계의 자체적 자구노력과 정부·금융권의 구조조정 등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 건설회사의 M&A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시장구조로 재편 필요가 있습니다."

JS Horizon

■ 참고자료

1. 세미나 개요

- [PF 건설사업의 위기에 따른 법적 문제 세미나 안내](#)

2. 관련기사

- [연합뉴스 - 대한상의, 'PF 건설사업의 위기에 따른 법적문제' 세미나](#)
- [동아일보 - "건설업계 위기 M&A로 타개를" 상의-건설협](#)
- [이데일리 - "PF사업 분쟁, 법 보다 합의 통해 해결해야"](#)

3. 행사 사진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님 환영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조용환 대표변호사 축사



Session 1 : PF 건설사업의 위기와 법적 쟁점



Session 2 : 건설회사 회생과 M&A



법무법인 지평지성 'PF 건설사업의 위기에 따른 법적 문제 세미나' (2008.12.05)

(지평지성 소식)

지평지성 '러시아연방의 에너지 개발 관련 법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 러시아·중앙아시아팀은 11월 19일, 본사 회의실에서 "러시아연방의 에너지 개발 관련 법제 (부제: 자원개발 관련 인허가 체계와 절차를 중심으로)" 외부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진 : 세미나 토론 중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류혜정 변호사)

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명한석 변호사가 사회자로, 법무법인 지평지성 류혜정 변호사가 발제자로, 한양대 국제학부 김연규 교수와 법무법인 울촌 정성엽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이밖에 지평지성 러시아·중앙아시아팀 변호사와 SERI-SNU Eurasia forum 회원 및 러시아법연구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지성이 용역 수행 중인 법제처의 '러시아 에너지 개발에 대한 법제 연구'를 소개하면서 해당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연구를 한층 심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러시아연방의 에너지 개발 관련 법제 세미나". 2008.11.19)

(지평지성 소식)

지평지성, LS니꼬동제련의 휘닉스엠앤엠 인수 법률자문

지난 11월 19일에 LS니꼬동제련이 자원재활용업체인 휘닉스엠앤엠의 주식 63.71% 매입 계약을 맺고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본 건의 LS니꼬동제련을 대리하여 휘닉스엠앤엠의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문 기사]

- [한국경제 - LS니꼬동, 자원재활용업체 인수 \(2008.11.19\)](#)
- [이데일리 - LS니꼬동제련, 자원재활용사업 전개 \(2008.11.19\)](#)

[담당 변호사]



(강경국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JS Horizon

(지평지성 소식)

지평지성 공익강좌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 공익위원회는 11월 19일 본사 회의실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익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의 정선희 상임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아래 약력 참조).



(사진 : 지평지성에서 강의 중인 정선희 상임이사)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어 사회복지의 새로운 대안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달성'과 '영리적 이윤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는 기업을 말합니다.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인 루비콘 베이커리는 장애인과 노숙자를 고용하여 빵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유명한 말이 이 회사에서 비롯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만들어져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새 정부나 지자체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적입니다.

이번 강좌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지평지성 변호사와 전문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변호사 및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로펌의 전문성을 사회에 기부하는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법무법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JS Horizon

[참고자료]

1.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정선희 상임이사 약력
 - 서울대 역사교육과 졸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사회사업학 석사
 - 前)기부정보가이드 대표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 現)실업극복국민재단 정책연구위원
- 現)노동부 중앙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
- 現)부스러기사랑나눔회 SK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자리 자문위원
- 現)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 전문위원
- 저서: '이익을 만들고 행복을 나누는 사회적 기업', '한국의 사회적 기업'

2. 관련 기사

- [경향신문 - '세스넷' 정선희 이사 "취약계층 자립 돕는게 최고의 자선"](#)

3. '사회적 기업' 관련 사이트

- [노동부 사이트 http://socialenterprise.or.kr/](http://socialenterprise.or.kr/)
-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http://www.sesnet.or.kr/](http://www.sesnet.or.kr/)
- [함께 일하는 재단 http://www.hamkke.org/](http://www.hamkke.org/)

(지평지성 소식)

지평지성, “2008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성금 전달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동영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대표하여 지난 11월 26일, 서울 구로노인복지관 광장에서 열린 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 주관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에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매년 소외된 소년소녀 가정과 무의탁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지역 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김장김치를 담가 나누는 행사로 상호간의 따뜻한 사랑과 보람을 나누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004년부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JS Horizon



(좌로부터 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 유종국 홍보부회장, 이충로 서울지역 본부장,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동영 대표변호사. 2008.11.26)

(지평지성 소식)

지평지성, “2008 사랑의 연탄 나눔” 참여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전문가 및 임직원 30여명은 12월 6일 서울 송파동 거여 2동에서 열린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http://www.lovecoal.org/>) 주관의 '2008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후원 성금을 기부하고 지역주민 11가구에 200장씩 연탄 총 2,200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2004년 6월 남과 북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005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JS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8 사랑의 연탄 나누기'. 2008.12.06)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금태섭 변호사

□학력사항

-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 졸업 (11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86학번)
- 코넬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 졸업(LL.M)

□경력사항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변호사 금태섭, 황선기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퍼스트 대표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저서 및 역서

- 저서 : 디케의 눈(공리, 2008)
- 역서 : 세상을 바꾼 법정(공리, 2006)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지평지성에 새로이 합류한 금태섭 변호사입니다. 저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검사 재직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근무하면서 정관계 및 기업 관련 대형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형사절차 전반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개업 이후 대기업 형사사건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형사변론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산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배심재판에서의 변론기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변론기술을 강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활동 및 금융,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문제를 사전적으로 파악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고객의 필요에 정확히 부응하는 것을 업무의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JS Horizon



지평지성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050-1600 Fax : (02)6050-1700

강남분사무소

(135-9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12층·14층 Tel : (02)2009-7500 Fax : (02)2009-7520

강북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30-7400 Fax : (02)6230-7610

상해 지사

Room 3305,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 86-21-5208-2807

호치민시티 지사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84-8-910-7510 Fax : 84-8-910-7511